Issue 002

التميمي و مشاركوه
AL TAMIMI & CO.

KOREAN NEWS DIGEST

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알타미미 Korea Group 입니다.

지난 Korean News Digest 창간 이후 많은 정부기관 및 기업관계자분들께서 저희의 노력을 환영해주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2020년을 맞아 지난해 하반기의 주요 법률이슈를 정리한 두번째 Korean News Digest 를 보내드리며 저희 알타미미 Korea Group 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중동내 최신 법제 정보 및 정책의 업데이트를 통해 중동에 진출해 있는 많은 우리 기업들에게 혜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 Group 배상

주요 연락처

Omar Omar
Partner,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Jiwon Ha
Senior Counsel
Dubai, UAE
j.ha@tamimi.com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Riyadh, Saudi Arabia
h.song@tamimi.com

Dukgeun (Thomas) Yun
Senior Associate
Dubai, UAE
dg.yun@tamimi.com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Contents

Disputes

ADGM 중재센터 중재지침
The ADGMAC Arbitration Guidelines 4

중재합의 권한에 대하여
Parties' Capacity to Arbitrate: A UAE Perspective 5

Corporate

MOU의 법적구속력 여부
MOUs: to Bind or Not to Bind? 6

UAE 개인파산법 공표
The UAE issues a new Personal Insolvency Law 8

UAE 내 경제적 실질 판단 요건
Economic Substance Reporting Requirement: Prepare Now 9

UAE 외국인 지분 보유 100% 허용 부문 (Positive List) 발표
UA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ments 10

이집트 투자환경 개선
Recent Regulatory Changes to Bolster Egypt's Economy 11

오만 신규회사법 개정안
Oman's New Commercial Companies Law 12

Real Estate

사우디아라비아 내 임대차계약
Leasing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13

Tax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전가격규정과 관련하여
Saudi Arabia Transfer Pricing Bylaws: Key Questions Answered 15

Construction & Infrastructure

GCC 내 철도 건설프로젝트 현황
The Development of Rail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GCC 17

Korea Group Press Release and News 18

ADGM 중재센터 중재지침

The ADGMAC Arbitration Guidelines

- 아부다비 중재기관인 ADGMAC (Abu Dhabi Global Market Arbitration Centre)는 2019년 9월 중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모듈 1은 효율적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면의 전자적 제출 의무, 주장사실의 제한, 서면의 페이지 제한,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모듈 2는 사실관계 증인, 모듈 3은 전문가 증인과 관련하여, 각각 판정부의 증언 내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 권한, 증인의 수와 신문사항에 대한 제한, 상대방의 답변 후 추가 증인 신청의 원칙적인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듈 4는 서증에 관하여 절차 지연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Redfern Schedule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모듈 5는 심리절차 (Hearing)와 사건 관리에 관하여, 모듈 6는 변호인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가이드라인은 중재절차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tober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he-adgmac-arbitration-guidelines-an-overview/

중재 권한에 대하여

Parties' Capacity to Arbitrate: A UAE Perspective

- UAE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재합의를 위한 특별수권이 요구된다는 것이 기존 UAE 민사소송법 및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Trade Licence 상의 General Manager가 아니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중재합의를 위한 권한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POA 상 일반 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중재합의에 대한 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UAE 법원에 의해 중재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처럼 중재합의를 위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2018년에 새로 제정된 UAE 중재법 제4조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UAE 법원의 중재친화적인 최근 입장에도 불구하고, 두바이 대법원은 2018년 11월 Trade Licence 상의 General Manager가 아닌 CEO가 중재합의에 서명한 사례에서 해당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UAE 판시 중에는 중재합의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라도 신의칙(Good Faith Principle)을 근거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두바이 대법원은 2019년 3월 계약서에 회사 이름만 표시되고 대표자가 명기되지 않은 채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서명이 적법한 수권을 받은 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요컨대 중재판정문을 UAE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자에게 중재합의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vember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parties-capacity-to-arbitrate-a-uae-perspective/

MOU의 법적구속력 여부

MOUs: to Bind or Not to Bind?

- MOU는 회사설립, 유통업체 및 용역업체 선임 등 다양한 상거래 및 특정 프로젝트에서 계약 당사자 간 최종 계약서 작성 이전에 주요 계약 조건을 미리 논의하고 규정하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비록 MOU 자체가 최종 계약서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거래 관련하여 상대방과 지속적인 논의 후, MOU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포함할 계약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MOU의 주요내용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용역 대금지급 요건, 최종 결과물 인도기한, 준거법,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며, 실제 MOU 체결 이후 당사자 간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도 미리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는 MOU 체결 이전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UAE 민사거래법 (Civil Transactions Law No. 5 of 1985)은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essential) 고려하는 요건 및 의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계약 상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MOU 체결 시, 관련 당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MOU의 모든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MOU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력 有	구속력 無
1.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계약 당사자는 MOU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 분쟁에 대비하여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중재 또는 소송)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재의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중재판정 집행가능성 (enforceability)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수립** 계약 당사자는 MOU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으나, 세부사항을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작투자의 경우, 당사자 간 자본금 투자규모 등은 추후에 결정되므로 MOU 상 해당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관련 비용 MOU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거래조건** 제품가격, 용역대금 등 거래대금은 최종 협상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3.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MOU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예정인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당사자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3. 선행조건** 계약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행조건 관련조항을 MOU에 삽입할 수 있으나, 추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4. 독점계약 계약 당사자는 MOU 대상 계약 외에 상대방이 제 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독점계약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본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4. 사업기간** 실제로, 사업기간의 경우 다양한 대내•외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MOU에 명시된 사업기간은 예상수치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5. 유효기간 MOU의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실제 최종 계약이 체결된 이후 MOU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손해배상책임 등의 제한 계약 당사자는 MOU 관련 손실 (최종계약 미성사) 등으로부터 권리보전을 위해 본 조항은 법적구속력을 갖습니다.	

UAE 개인파산법 공표

The UAE issues a new Personal Insolvency Law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지난 8월에 개인파산법 (Insolvency Law)을 공표하였고, 해당 법은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채무청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는 현지 법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법은 개인 (natural persons) 및 사망자의 부동산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기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파산법 (Bankruptcy Law)와 구별되지만, 두 법령 모두 채무자와 채권자 간 원활한 합의도출을 통한 권리보전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청산안 (settlement plan)을 제출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채무청산이 어려울 시, 법원에 공식적인 채무청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는 법원에서 임명한 1인 (또는 이상)의 전문가에 채무청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채권자 및 법원이 승인하면 채무상환 유예 (moratorium)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발적으로 청산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채무 및 자산 내역을 잘못 기록한 경우, 영업일 기준 50일 연속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청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가 AED 200,000 이상인 경우, 채권자는 절차상 채무자에 채무지급을 요청하였고, 영업일 기준 50일 내에 해당 채무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법원을 통한 채무청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실제 채무청산절차를 담당 및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감독할 관재인 (trustee)을 선임합니다. 법원이 현지 신문을 통해 채무청산절차 개시를 확정하면, 채권자는 20일 내에 개별적으로 법원에 채권회수를 요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관재인 승인없이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본인이 보유한 현금 및 자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고 채무청산 시, 채무자의 자산 및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 만약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회수를 위해 금액을 조작하거나 법원의 채무청산절차 착수 이후, 본인의 권리보전을 위해 채무자와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최대 AED 100,0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손실을 줄 수 있는 특정행위를 한 경우, 최대 AED 60,000에 달하는 벌금 및/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vember 2019

https://www.tamimi.com/news/the-uae-issues-a-new-personal-insolvency-law/

아랍에미리트 (UAE) 내 경제적 실질 판단 요건

Economic Substance Reporting Requirement: Prepare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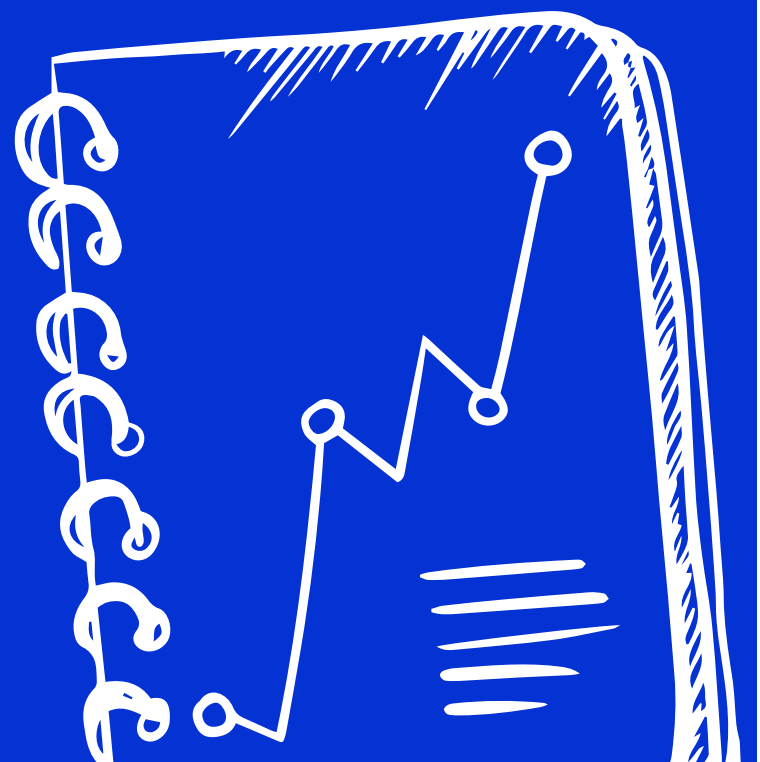

- UAE정부는 4월 30일자로 발효된 내각 결의안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 31 of 2019) 과 재경부 (Ministry of Finance)에서 결의안과 관련하여 9월 11일에 발표한 가이드 규정 (Ministerial Decision No. 215 of 2019) 을 통해 경제적 실질 (Economic Substance) 판단 요건 (이하 "경제적실질정책")을 도입하고, UAE 내의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세무당국에 경제적 실질 관련 보고를 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및 의무

  이번에 도입된 경제적실질정책에 따르면 사업면허 (Commercial License) 를 보유하고 금융, 보험, 투자펀드 운용, 선박, 리스금융, 헤드커터, 지적재산권 등 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UAE내 기업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포함하며, 각종 프리존에 설립된 기업들도 포함함; 이하 "적용대상 기업") 은 반드시 경제적실질 판단 요건과 관련하여 경제적실질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세무당국에 매년 경제적실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제적실질 판단 요건

  적용대상기업의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제적실질 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1. UAE내에서 직접적인 소득발생 활동 (Core Income-generating Activities)을 해야한다;
  2.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UAE내에서 운영 (Directed and Managed)해야한다(예, 이사회가 UAE내에서 개최되고 의사록이 UAE내에 보관될 것, 이사회 개최시 과반 이상의 이사가 UAE내에서 실제로 참석할 것, 이사들이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지식 및 전문성을 보유할 것);
  3. UAE내 사업활동 영위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직원 및 자산을 보유하고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기업은 매년 사업활동, 소득, 비용 및 자산과 관련한 세부자료와 함께 상기 경제적실질 요건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세무당국에 매회계연도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경제적실질요건 판단보고서 (이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제약사항

  상기 경제적실질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적용대상기업들에게는 아래의 제재금 (Monetary Sanction) 이 부과됩니다.

  1. 경제적실질요건 미준수시 AED 50,000 이하의 벌금;
  2. 1차 미준수 통보이후 다음 회계연도에도 미준수시 AED 300,000 이하의 벌금;
  3. 또한 관련 당국에서는 상기 제제금이외에도 사업면허 정지, 취소, 미갱신 등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 상기 UAE내에서의 제약사항 이외에도, 관련당국은 미준수기업의 모회사 등이 위치한 국가의 관련 기관 (Overseas Authorities) 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September 2019

https://www.tamimi.com/news/economic-substance-reporting-requirement-prepare-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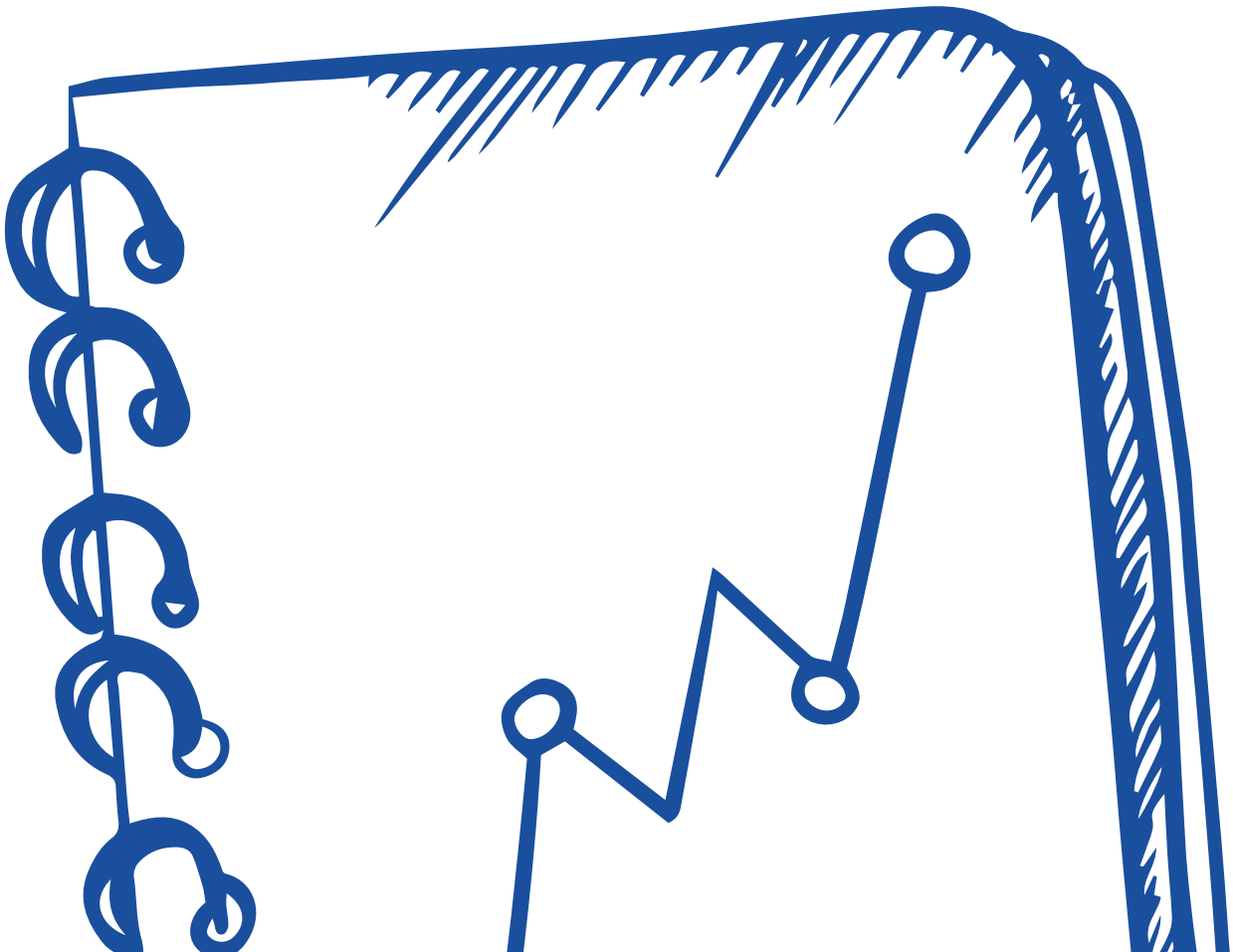

UAE 외국인 지분 보유 100% 허용 부문 (Positive List) 발표

UA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ments

- 작년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이 발표된 이후 9개월만인 2019년 7월, UAE는 각료회의를 통해 외국인 지분 보유 100%가 허용되는 Positive List 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결정을 통해 13개 산업 부문의 122개 세부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 100% 보유가 허용될 예정이며 그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명	최소투자금액
Hospitals	AED 100,000,000
Medical and Dental Clinics	관련법에 따름
Education	관련법에 따름
Retail Sale in non-specialised stores	AED 100,000,000
Land and Sea Transport of Goods	관련법에 따름
51 Manufacturing Activitie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food products (except of Bakery, Dairy and Animal Feeds).	Ranges between AED 3,000,000 - AED 100,000,000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 Buildings	관련법에 따름

- 다만, 본 내각 결의를 통해 외국인 지분 보유가 온전히 개방된 분야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투자건을 심사하고 실제 외국인 지분 최대 비유을 결정할 권한은 각 토후국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향후 각 정부별 적용계획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이번 Positive List 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분야 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합니다.

July 2019

https://www.tamimi.com/news/uae-foreign-direct-investment-developments/

이집트 투자환경 개선

Recent Regulatory Changes to Bolster Egypt's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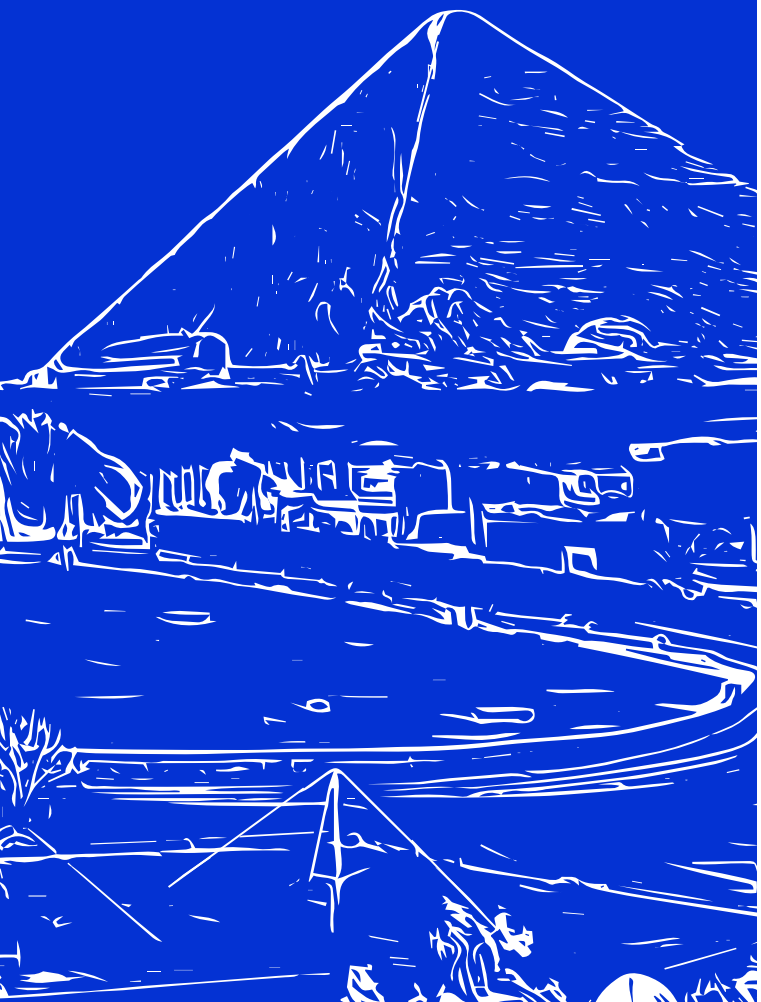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이집트의 비즈니스 환경은 2017년 제정된 투자법과 최근 개정된 회사법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집트 총괄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s, 이하 GAFI)은 투자법과 회사법의 조항들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 먼저 주식회사의 경우 중앙 보관소에 보유 주식을 등록해야 하는데, GAFI는 기존 회사의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을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설립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서 자본금 예치와 함께 지적되었던 은행 증명서(bank certificate) 제출을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1명의 이집트 로컬 매니저를 요구하던 것도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이집트 기업 환경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한편 대표사무소의 경우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 근로자 명단과 상세 업무 내역, 그리고 시장조사의 일정을 매년 GAFI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등록 후 지사 설립까지 3년 기한이 생긴 부분도 달라진 점입니다. 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ne/July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recent-regulatory-changes-to-bolster-egypts-economy/

오만 신규회사법 개정안

Oman's New Commercial Companies Law

- 오만의 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이 1974년 제정된 이래 최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인의 주주(개인 또는 법인)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인데, 여기서 1인은 오만 국민 또는 GCC 국민이어야 하므로 외국인투자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에 관하여는, 지배인(manager)의 책임이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점, 지배인과 회사 간 이해충돌시 이를 주주총회에 통지해야 하는 점, 회사가 지배인 혹은 주주(shareholder)에게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는 점,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10년 전까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이 새로운 내용입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의 방법, 소집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거래에 대한 이사의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는 점, 주주에 대한 배당을 현금 대신 지분으로 가능케 한 점, 해외주식예탁증서를 허용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가능케 한 점, 등록된 자본금을 25%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점, 자본금 감소에 대해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한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킨 점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만에 등록된 회사들은 정관을 개정하는 등 회사법의 개정 내용에 위반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ptember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omans-new-commercial-companies-law/

사우디아라비아 내 임대차계약

Leasing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임대차계약을 제한하는 법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샤리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주거 시설에 대한 임대차는 정형화된, 간단한 양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사무실, 상가, 기타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양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 - 사우디 주택부 (Ministry of Housing)는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정하였으며, 산업시설 및 농지에 대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도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Ejar (임대차계약을 등록하는 사우디 정부 시스템)에 임대차계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사우디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는 2019년 1월 Ejar에 등록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사우디법원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사우디법원은 현재로서는 Ejar에 등록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거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 주거시설에 대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대부분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예를 들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필요한 담보 제공, 공유 부분의 이용에 관한 사항, 주거 시설을 이용할 사람의 수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조항에 반하는 조항들을 추가할 경우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Ejar에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Ejar에 등록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 복합 상업시설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REITs와 같은 발달된 투자기법 등이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사우디 주택부가 제정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을 Ejar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우디 주택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우디 주택부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이용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Ejar에 등록하기 위하여 사우디 주택부로부터 개별적인 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쟁 해결 -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기존의 분쟁은 대부분 사우디 법원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2012년 중재법을 개정하고, 2016년 사우디 상사중재원을 설립한 이후 상사 중재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중재를 선택함으로써 분쟁 해결과 관련한 언어를 아랍어가 아닌 영어로 지정하고 중재인 선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거시설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야만 이를 Ejar에 등록할 수 있으며, Ejar에 등록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야만 Ejar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우디 주택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Ejar에 등록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사우디 법원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우디 법무부의 입장에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전가격규정과 관련하여

Saudi Arabia Transfer Pricing Bylaws: Key Questions Answ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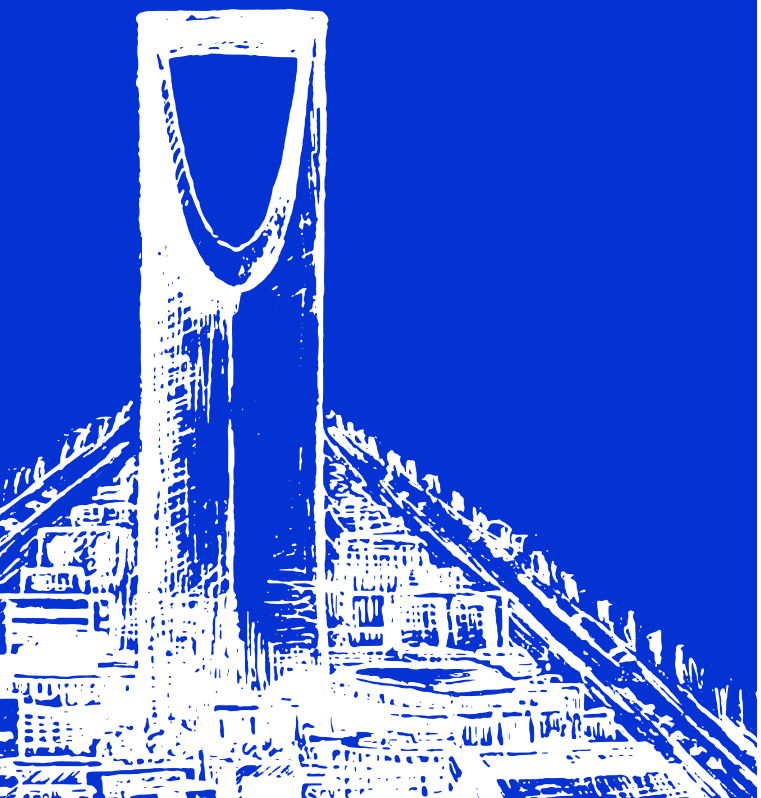

- 사우디는 국세청 (the 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 GAZT)은 2019년 2월 이전가격규정 (Transfer Pricing Bylaws)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우디 국세청의 이전가격규정은 대체로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전가격규정의 적용 범위, 주요 조항, 준수 사항 및 이전가격규정의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가격규정의 적용범위 - 이전가격규정은 사우디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사자인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됩니다. 사우디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non-GCC 외국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사우디 회사, non-GCC 외국인과 GCC 국적자 사이에 설립된 사우디 JV 및 비거주자의 사우디내 고정사업장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지만, Zakat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 [이전가격규정의 주요조항]

  가. 독립기업과세 원칙 -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들간의 거래였다면 적용되었을 거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특수관계자의 정의 - 이전가격규정에 따라 사우디에서도 사실상의 지배에 의한 특수관계자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어느 회사와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거나, 경영위임계약, 신탁계약 등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총거래가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가 특정 회사에 집중되어 있거나,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됩니다.

  다. 정상가격의 범위 및 이전가격 결정방법 - 이전가격규정에 따르면 정상가격의 범위는 허용된 이전가격 결정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사우디 국세청은 사분위법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수용 가능한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가격규정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법과 같은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들은 위에서 열거한 어떠한 방법들도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기에 신뢰할 만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다른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이전가격 조정 - 만약 거래가 정상가격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우디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에 기초하여 수익 및 비용을 재분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이전가격규정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

가. 공개의무 -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모든 납세자들은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사우디 국세청에 특수관계자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의무는 회계년도 종료 후 120일이내에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가격 공개 양식 제출시 납세자가 이전가격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진술서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가격에 기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 - 연간 기준 600만 사우디 리얄 (미화 약 160만불)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납세자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Zakat만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제외).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그룹이 전세계를 통해 수행하는 비즈니스 정보 및 이전가격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별기업보고서에는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이전가격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사우디 국세청은 세법 이외에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추가적인 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전가격규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기존 세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공개의무,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 의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GCC 내 철도 건설프로젝트 현황

The Development of Rail Infrastructure Project in the G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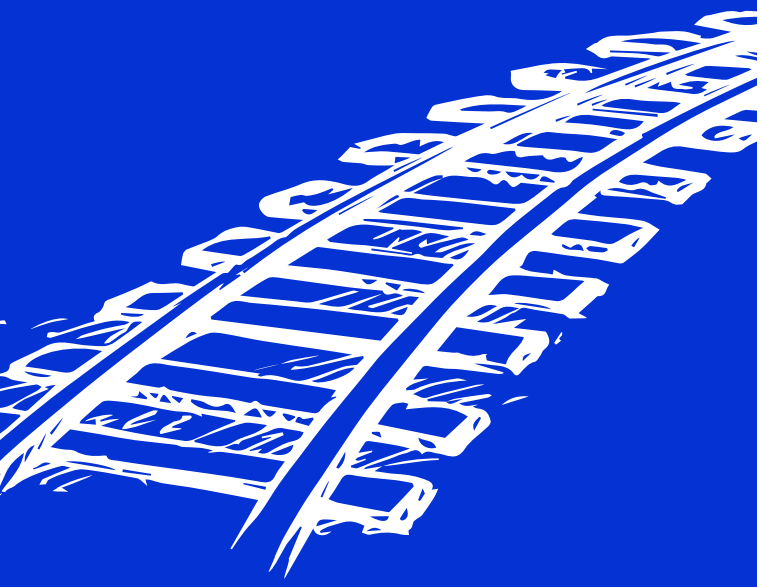

- 중동에서 철도 산업은 급격한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GCC 철로 사업의 경우 사업비만 2,400억 불 규모에 총 길이는 2,117km에 이릅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철도 인프라의 개발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리야드 메트로 사업의 경우 230억 불 규모에 6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연장 176km에 85개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UAE의 경우 두바이에 신규 역을 4개 추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만은 총 연장 375km의 철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최근 3개 노선, 총 연장 160km, 68개역 규모의 메트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철도산업의 본질과 규모상 필연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공기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원가가 예상보다 크게 초과되는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철도 분야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Interface) 리스크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 등 의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계약 초기 단계부터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ptember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he-development-of-rail-infrastructure-projects-in-the-gcc-2/

Korea Group Press Release

법률신문 – 알타미미 한국팀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주관 UAE 순회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

저희 알타미미 한국팀 변호사 3인 (하지원 변호사, 송형민 변호사, 윤덕근 변호사)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11월 19일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중재관련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하여 중동지역에서의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UAE 순회 세미나의 일환으로 11월 19 – 20일 양일간 아부다비 및 두바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 중재기관인 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 중재센터와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이하 "DIFC") 중재센터뿐만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병우 중재전문 변호사, 전동옥 변호사 및 법무법인 화우 김연수 변호사 등 국내•외 중재전문가와 현지 지상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알타미미는 중동 대표로펌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하지원 변호사와 윤덕근 변호사가 UAE에서의 실제 자문경험을 토대로 현지 스폰서 (Local Service Agent) 및 Distributor와의 분쟁 시 유의사항과 해외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사무소에 상주하는 송형민 변호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원체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국내건설사의향후 분쟁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대표 산유국 정부들이 경제다각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관광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부문의 경우, 발주처 및 시공사 간 대금지급, 계약연장 등 관련 클레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중동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국내 법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소송이 개시되면 판결까지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해외중재판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국내•외 유수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현지에 진출해 계시는 지상사 관계자 및 국내 기업에 특화된 자문서비스 뿐만 아니라 현지 법령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와 관련한 기사 전문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479

Korea Group News

1.하지원 변호사, UAE 진출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대상 강의

알타미미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9월, KOTRA 두바이무역관이 현지 벤처기업인 Shorooq Investments 와 공동으로 주관한 "Jusoor Accelerator Program"의 강사로 초빙되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시 유의점, 각종 지재권 이슈 및 UAE 노동법 이슈 등과 관련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usoor Accelerator Program은 KOTRA 두바이무역관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 (Series A 이상)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9년에 출범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1:1 멘토링, 피칭 및 투자가 미팅, 창업 지원기관 방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참여업체: Jaaem (한국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Justy's Adventure (선박수리 커뮤니캐이션 앱), Blue Signal (교통예측 서비스 앱), Abu Hakim (언어, 결제 및 배달 솔루션 제공기업), Tosslab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사무용 메시징 앱), Megazone Cloud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앱)

2. 하지원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 사업설명회 및 전략세미나 강의

지난 11월 26일, 하지원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의료 해외진출 사업설명회 및 전략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되어 "중동지역 헬스케어 법률정보 및 시장동향"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2017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의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 알타미미 Korea Group, "UAE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및 법률 가이드" 발간 참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은 작년 11월에 UAE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 및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실제 사례와 사건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담은 "UAE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및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 제작에는 알타미미 한국팀장 하지원 변호사와 강윤정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하지원 변호사는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2015년 – 현재) 및 주두바이총영사관 (2017년 – 현재)의 법률자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이 현지 교민분들 및 UAE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가이드북 전문은 대사관 및 UAE 한인회 홈페이지 또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
http://overseas.mofa.go.kr/ae-ko/brd/m_11119/view.do?seq=1346445 (주아랍에리미트 대사관)

http://uae.korean.net/bbs/board.php?bo_table=uaekoreannotice&wr_id=1449 (UAE 한인회)**

4. 윤덕근 변호사, 쿠웨이트 사업활동 시 법적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

윤덕근 변호사는 지난 12월 11일, 주쿠웨이트대사관에서 주최한 2019년 기업지원활동협의회에 참석하여 "국내 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사업활동 시 유의해야 할 주요 법령 및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쿠웨이트 지상사 및 건설 하도급사, 현지 주재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쿠웨이트에서 수주활동 시 법적•세무 유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 도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영기 주쿠웨이트 대사, 이장원 국토관, 홍창석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장 등을 포함하여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윤덕근 변호사는 건설•분쟁전문가로, 2019년에 알타미미 한국팀 합류 후, 국내 건설사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송형민 변호사, 바레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역 지상사 관계자 대상으로 강의

송형민 변호사는 지난 12월 12일, 주바레인대사관에서 주최한 2019년 하반기 기업지원활동협의회에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에는 바레인 지상사,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역 건설사 및 방산업체 대표가 참석하여 현지 사업활동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는 2018년부터 알타미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무소에 상주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바레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윤덕근 변호사, 중동 건설 클레임 관련 현지 관계자 대상으로 발표

윤덕근 변호사는 작년 12월 15일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 한-UAE 인프라협력센터가 주관하는 UAE 건설플랜트협의회에 참석하여 "중동 건설 클레임 관련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진행되는 본 협의회는 권용우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UAE 현지진출 건설사 임직원 및 지상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네트워킹과 더불어 현지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التميمي و مشاركوه
AL TAMIMI & CO.

@AlTamimiCompany

Al Tamimi & Company

www.tamimi.com